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8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박대출 의원안)	3

I.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24.
-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박대출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경과조치(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6조) ☐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가능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박대출의원안 2024. 10. 24. 제출(의안번호 4886)

☐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주주단계에서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¹⁾ 제도로서, 법인주주가 받은 수입배당금²⁾의 일정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1)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세후소득이 배당된 후 다시 주주에게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 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 대립이 있음. 현행 세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2)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 포함됨.

록 하는 것임.

기존에는 일반규정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舊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특례규정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제도(舊 「법인세법」 제18조의3)로 나누어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자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 서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³⁾

그런데 2022년 세법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

3) 舊 「법인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세형평에 부합하도록 기업형태에 따른 구분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 전·후 상장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

개정 전			현행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 (제18조의3)	40% 이상	100%	지주회사, 일반회사 동일 (제18조의3)	50% 이상	100%
	30% 이상	90%			
	40% 미만			80%	
	30% 미만	20% 이상 50% 미만			80%
일반회사 (제18조의2)	100%			100%	
	30% 이상	50%			
	100% 미만		30%		
30% 미만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부칙에 포함되어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음.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는 2023년 9월 기준 172개로 2011년 9월 대비 67개 증가하였음.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 개)

구 분	‘11.9.	‘12.9.	‘13.9.	‘14.9.	‘15.9.	‘16.9.	‘17.9.	‘18.9.	‘19.9.	‘20.9.	‘20.12.	‘21.9.	‘21.12.	‘22.9.	‘23.9.
일반지주회사	92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	158	-	162
대기업집단	26	28	30	30	29	19	39	34	37	41	44	-	47	-	57
금융지주회사	13	12	13	15	10	10	10	9	10	10	10	-	10	-	10
대기업집단	2	2	2	1	1	1	2	3	2	2	2	-	1	-	1
합 계	105	115	127	132	140	162	193	173	173	167	164	-	168	-	172
대기업집단	28	30	32	31	30	20	41	37	39	43	46	48	48	55	5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72.9%(상장 39.7%, 비상장 85.6%)로 법상 의무지분율 요건⁴⁾을 상회하는 수준임.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2021년 12월 대비 감소했고,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증가했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평균 지분율 변동 추이]

(단위: %)

구분	‘14.9.	‘15.9.	‘16.9.	‘17.9.	‘18.9.	‘19.9.	‘20.9.	‘20.12.	‘21.12.	‘23.9.
상장 자회사	42.7	41.9	40.7	40.1	39.4	40.1	39.7	40.0	40.5	39.7
비상장 자회사	82.3	81.2	82.6	83.0	82.8	85.5	85.6	86.3	85.5	8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더 높은 익금불산입률

4) 2021.12.30. 전 설립·전환한 종전지주(자)회사는 당시 지배하던 종전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비상장 40%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021.12.30. 이후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및 종전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 30%·비상장 50% 이상이어야 함.

을 적용받기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확보할 기간을 제공하여
지주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20% 이상 30% 미만’인
지주회사는 개정 전·후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동일하지만,
지분율이 ‘20% 미만’이거나 ‘30% 이상 50% 미만’인 지주회사는 수
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짐.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개정 전·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

지분율	개정 전(A)	현행(B)	A-B
50% 이상	100%	100%	-
40% 이상 50% 미만	100%	80%	△20%
30% 이상 40% 미만	90%	80%	△10%
20%이상 30% 미만	80%	80%	-
20% 미만	80%	30%	△50%

주) 자회사는 상장법인을 가정함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거나 ‘30% 이상
50% 미만’인 지주회사는 현행 규정을 적용받으면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발생함.

그런데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지주회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
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여유기간이 늘어나
기 때문에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주회사 설

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익금불산입률 축소를 유예함으로써 정책기조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정책실효를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둘째, 유예기간이 연장되면 지주회사가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늘어나므로, 지분율을 늘리는 데 소요되는 지주회사의 비용부담이 작아질 수 있음.

지주회사가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단기간 내 매입한다면, 자회사 주가 상승 등으로 자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하려는 지주회사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음.

또한, 대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입하면서 자회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만약 개정안에 따라, 유예기간이 늘어나면 지주회사는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자회사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당초 법 개정 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함으로써 정책실효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법 개정에 따라 부여된 1년의 유예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분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단기간 내 자금을 확보하고 자회사 지

분율을 늘린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이 연장되면 정책실효도가 낮아질 수 있음.

특히, 해당 지주회사들은 단기간 내 자금을 확보하고 지분율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비용 등의 발생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집단은 현행법을 적용받을 때 익금불산입률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지주회사들이므로 특혜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